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작성예시)-근로자용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 청구인 (수급자격자)	★ ① 성명 김고용 ★ ②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 ★ ③ 주소 울산 남구 화합로 000, (2층) <span style="color: blue;">★ (전화번호: 052-228-1234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span>		
	★ ④ 사업장명 울산고용센터 ★ ⑤ 대표자의 성명 이선희 ★ ⑥ 소재지 울산 남구 화합로 106 <span style="color: blue;">(전화번호: 052-228-5678)</span>		
★ 취직사업장 (사업에 고용된 경우)	★ ⑦ 취직일 2020.05.01.	★ ⑧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2020.04.27.	★ ⑨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울산OO기업
	★ ⑩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해당란에 O, X 표시) <input type="checkbox"/> 영업을 양도·양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input type="checkbox"/>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input type="checkbox"/> 합병·분할된 사업장에 재취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없음		

★ ④ ~ ⑧ : 취업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한 첫 번째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

★ ⑧ 출근통보 받은 날짜 ★ ⑨ 실업급여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이름

★ ⑩ 실업급여 받기 전·후 사업장의 사업주 간의 관계

<★ 빈 곳 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작성 중 문의사항 052-228-1909 >

자영업 사업장 (창업 등의 경우)	⑪ 사업장명	⑫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
	⑬ 소재지		
	⑭ 사업 시작일	⑮ 사업자 등록번호	
	⑯ 업종		

★ ⑰ 지급계좌	<span style="color: blue;">123-45-678900</span> (은행명: OO은행 예금주: 김고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span style="color: blue;">2021년 5월 15일</span> <span style="color: blue;">김고용 (사명 또는 인)</span>			
<span style="color: blue;">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귀하</span>			

청구인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 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 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앞쪽 )

<p><b>청구인 제출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2.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li> </ul>	<p><b>수수료 없음</b></p>
<p><b>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b></p> <p>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처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 사유		
결재	담당	팀장 <b>전결</b>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210mm × 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문의 : 울산복지센터+센터 실업급여팀 ☎ 052-228-1901 또는 228-1964, 팩스 0508-8230-0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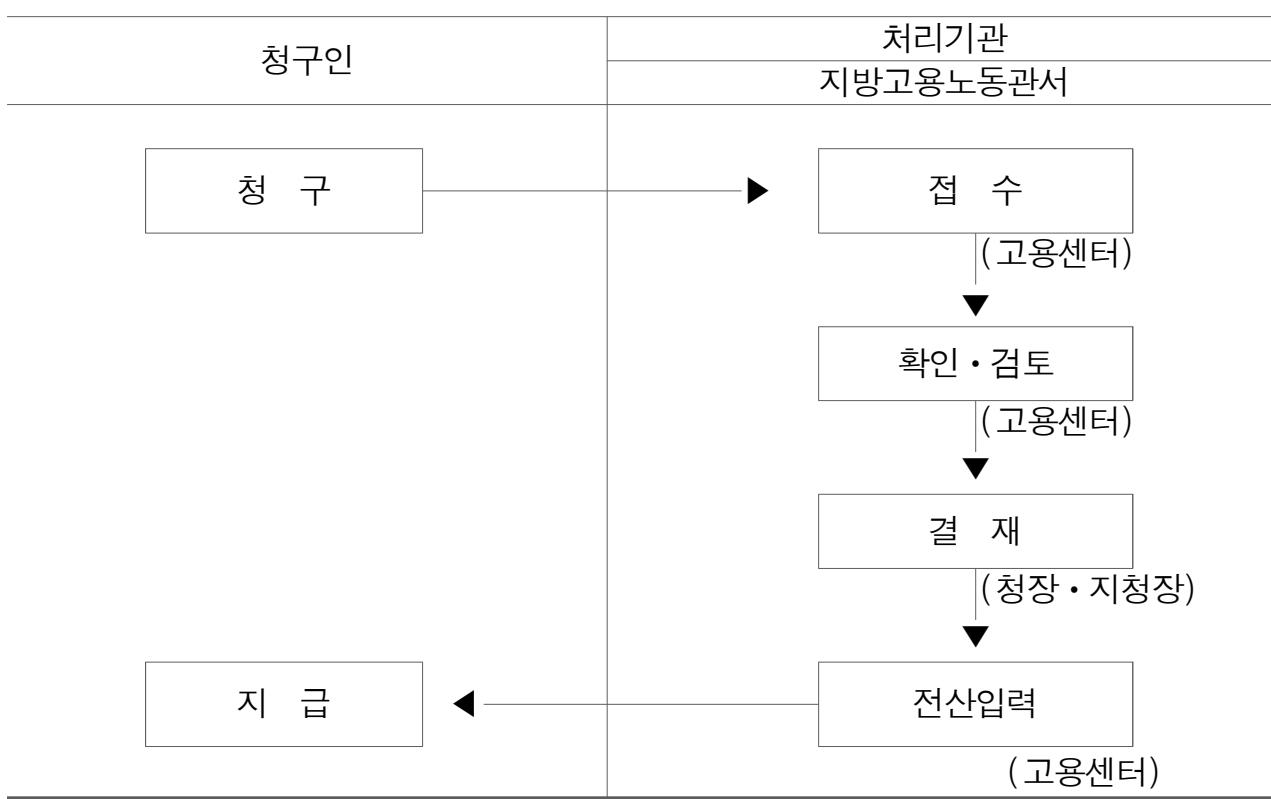
### 공지사항

1.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의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 ⑯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4. ⑦란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
5. ⑧란은 취직 사업장에 고용되기 이전에 취직이 확정되었음을 유선, 서면 등으로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⑩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인이 취직한 사업장과 ⑨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7. ⑯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연월일"을 적습니다.  
※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8.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 처리절차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관련 안내

## ▶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지급됩니다.(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포함)을 개시하였을 것
- ②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단, 단절기간이 9일이내인 경우 → “상용근로자”로 재취업한 후 “사업주의 사정[비자발적 사유-폐업, 도산, 권고사직(상실코드 22, 23)]”에 의해 퇴직하고 다시 “상용근로자”로 재취업일까지 “10일미만(공휴일포함)” 인 경우 “계속 고용”으로 인정(단, 상용근로자 취업된 경우만 해당)★
- ③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한 경우, 재취업한 날 기준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ex. 재취업일이 3월15일의 경우, 단위개월 산정은 3월15일~4월14일(1개월째), 4월15일~5월14일(2개월째)----->  
다음해 2월15일~3월14일(12개월째), 매 개월 마다 10일이상 일용근로(근로복지공단 신고 필수)]
- ④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  
-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소1회 이상 해당 직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아님.

## ▶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①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또는 사업주)에 다시” 취업한 경우
- ②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④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미만”인 경우
-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일용근로의 경우 근로일수 10일 미만)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단, 상용근로자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단절기간이 9일이내”인 경우는 제외)**
-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1회이상)을 받은 이력 없이 경우★”  
**바로 사업(자영업)(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포함)을 개시한 경우**

## ▶ 지급금액 : (구직급여일액×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근로자, 자영업사업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공통)  
-서식:울산고용복지+센터([www.work.go.kr/ulsan](http://www.work.go.kr/ulsan))-->정보마당-->서식자료실-->“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② 첨부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1년이상근무기간확인) 또는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1년이상확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피보험자일용근로내역”으로 근로일수 확인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과세증명자료[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매월 1건), 매입매출전표(매월1건)등 12개월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노무제공자, 프리랜서등 : 계약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등과 12개월간 급여 또는 소득금액 증명자료

### ▶ 신청방법

- ① 방문/우편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2층(실업급여팀)
- ② 팩스 : 0508-8230-0439(전송 후 울산고용센터 052-228-1901 또는 228-1980 유선확인)
- ③ 인터넷 :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http://www.ei.go.kr))

## ▶ 신청기한 :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자영업사업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기준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청구(처리기한 14일-주말제외)